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88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3. 24.
판 결 선 고	2017.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9,013,090원(토지분 323,954,010원 및 건물분 265,059,080원, 각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9,861,810원(토지분 27,423,730원 및 건물분 22,438,080원, 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모직'이라고 한다)는 2010. 12. 29.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 대 682.6㎡ 및 같은 동 [redacted] 대 47.9㎡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10. 23.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4,370.31㎡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redacted]모직은 2013. 9. 5.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5층까지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패션사업 부문의 여성복 사업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redacted]모직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 9. 16. 원고(2014. 7. 2. [redacted]모직을 흡수합병하였다)에 대하여 취득세 589,013,090원(토지분 323,954,010원 및 건물분 265,059,080원, 각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9,861,810원(토지분 27,423,730원 및 건물분 22,438,080원, 각 가산세 포함)을 증액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가. 원고의 주장

[redacted]모직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패션사업부의 여러 업무 중 여성복 부서의 생산, 연구개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이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redacted]모직은 [redacted]시 [redacted]동에 있는 R&D센터에 별도의 건물에 사장실, 인사팀 등을 두고 있고, 패션사업부문의 경우 [redacted]구 [redacted]동에 있는 [redacted]빌딩에 인사, 노무, 재무, 법무 등 사업부문 전체를 통할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관련 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장소, 보관창고나 하치장을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행위'란 제품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redacted]모직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여성용 의류 제조업무와 여성복의 생산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제품의 판매를 위한 영업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부분은 관련 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은 본점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장소도 아니고 제품의 판매를 위한 영업업무 장소도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정한 '본점 또는 지점의 설치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달리 위 규정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과세목적물로 하여 승계취득 등을 제외하고 '신축 또는 증축'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본점이란 기업 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심점으로서 모든 영업소를 통할하는 최고의 지휘를 하는 영업소를 말하므로 그 개념상 다수가 존재할 수 없으나, 이러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은 그 기업의 형편상 일부 부서를 분산하여 여러 장소에 둘 수 있고 이에 위 규정도 부대시설용 부동산까지 과세목적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법인이 고유의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본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내에 신축 또는 증축한 다른 부동산에서 본점의 일부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그 업무가 다른 지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 또는 증축한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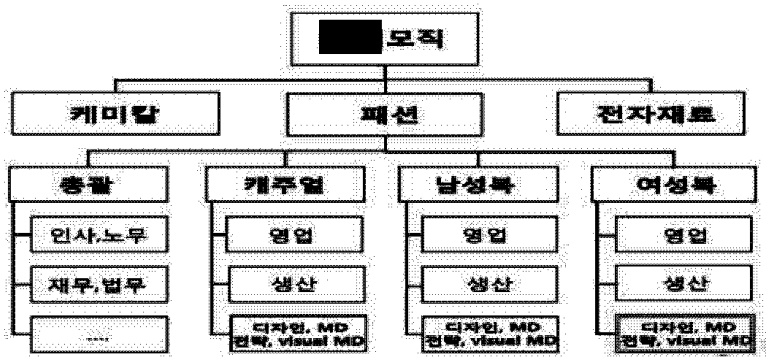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 7, 1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다.

가) [redacted]모직은 법인등기부상 [redacted]시 [redacted]동 [redacted]을 본점소재지로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조직의 구성원들은 [redacted]시 [redacted]로 [redacted]에 있는 R&D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redacted]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의 사장실은 [redacted]구 [redacted]로[redacted]길 [redacted]에 있는 [redacted]빌딩에 있었고, 그곳에서 패션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인사, 노무, 재무, 법무 등 업무가 이루어졌다.

나) [redacted]모직은 케미컬, 패션, 전자재료의 3개 사업 부문을 두고 있었고, 수지소재 및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판매업, 반도체 재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의류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제일모직의 개괄적인 조직체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배치된 사업부는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한다.



다) [redacted]모직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직후인 2012. 12. 28.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스'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9. 5. [redacted]스를 흡수합병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라) 이후 [redacted]모직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존 [redacted]스 직원 187명을 [redacted]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redacted]구 [redacted]로[redacted]길 [redacted](수[redacted]동, [redacted]빌딩)의 사무실(이하 '수[redacted]동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이전하게 한 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redacted]모직 패션사업 부문 중 "여성복 사업부"(그 내부 부서에는 전략팀, R&D팀, KUHO팀, LEBEIGE팀, Epitaph팀이 있다), "글로벌소싱담당 사업부"(그 내부 부서는 생산팀이다)를 배치하였다[이 사건 건물 부분 중 ① 2층에는 여성복공급운영팀(개발), 여성복공급운영팀(생산), ② 3층에는 여성복 R&D팀(소재실), LEBEIGE팀, LEBEIGE팀(기획), LEBEIGE팀(디자인), LEBEIGE팀(리빙), ③ 4층에는 여성복전략팀, 여성복 R&D팀, 여성복 R&D팀(니트실), 여성복 R&D팀(ACC실), 5층에는 KUHO팀, KUHO팀(기획), KUHO팀(디자인), KUHO팀(컬렉션)이 각 배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근무하는 [redacted]모직의 임직원은 총 111명이었는데, 그 중 임원으로는 여성복사업부 소속 상무 1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100명의 직원들의 직급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으로 다양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설치된 사업부에는 인사, 재무 · 회계 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수송동 사무실에 위치한 인사, 재무 · 회계 부서에서 인사, 재무 · 회계에 관한 업무처리를 전담하고 있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별도로 본점을 두고 있는 [redacted]모직이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수행되는 패션사업 부문 중 여성복 사업부의 업무는 본점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은 [redacted]모직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입주한 여성복 사업부는 조직체계상 [redacted]모직 본점의 일부 조직, 즉 [redacted]모직 패션사업 부문의 일부였다.

나) [redacted]모직이 이 사건 건물에 패션사업 부문 중 일부인 여성복 사업부를 이전하여 여성복에 관한 사업전략, 디자인 등 연구개발, 생산관리 등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기능적으로도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redacted]모직 본점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었다.

다) ① 이 사건 건물 부분에는 독립된 법인의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인사, 재무 · 회계 조직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배치된 여성복 사업부의 장은 상무로서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 주식회사인 [redacted]모직에 있어서 전체 기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③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예산 · 회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수행되는 패션사업 부문의 업무는 본점의 업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패션사업 부문의 본부에 해당하는 [redacted]동 사무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을 처분근거로 삼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22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끝.